

---

# 2024학년도 장애학생 지원계획

---

2024.02

장애학생지원센터

# 목 차

- I. 지원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· 1
- II. 2024학년도 장애학생 지원 계획 · 2
- III. 월별 사업 추진 일정 · 5
- IV. 사업별 세부 장애학생 지원 내용 · 6
- V. 2024학년도 원격수업 따른 장애학생 지원 계획 · 12
- VI.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· 14
- VII. 2024학년도 대학원 장애학생 지원 계획 · 15
- VIII. 대학원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규정 · 17

##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

---

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교생활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지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 2항 및 안양대학교 「장애학생지원규정」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한다.

### | 목 적

---

- 교수·학습 지원으로 장애학생 교내 교육활동 편의 도모
- 학교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복지 향상
- 취업 및 진로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성취감 고취
- 장애학생 시설 설비지원을 통한 교내 이동 및 접근성 향상
-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학내 구성원들의 장애인 차별 없는 문화 선도

## II 2024학년도 장애학생 지원 계획

### 가. 2024학년도 연간 계획

구분	사업명	지원계획	비고
교수·학습 지원	장애유형별 맞춤형 강의계획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학생이 신청한 맞춤형 강의계획서를 근거로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장애학생유형별 맞춤형 강의 지원</li> </ul>	
	학습 및 이동 봉사도우미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는 학습지원 봉사도우미 연계 이동 및 생활지원 봉사도우미 연계</li> </ul>	
	우선수강 신청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사지원과와 연계하여 장애학생 우선 수강 신청 지원</li> </ul>	
	교수법 가이드북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유형에 따라 교수법이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북 제공</li> </ul>	
	평가기간 편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학생이 신청한 평가기간 편의 지원 요청서를 근거로 장애학생유형별 평가기간 편의지원</li> </ul>	
학교생활 지원	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리비전학기시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안내 및 센터 소개 영상 상영</li> </ul>	사업별 세부 장애학생 지원 내용 참조
	장애학생 및 봉사도우미 사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학생등록카드, 도우미요청서, 서약서 작성, 서비스지원요청조사</li> </ul>	
	장학금 상담 및 나눔장학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학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장학상담 및 나눔장학금 지원</li> </ul>	
	장애학생 상담 및 의견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 기상담(년2회)</li> <li>소속직원이 사전면담요청을 취한 후 상담을 원하는 장애학생에 한해서 요청 사항 및 민원접수</li> </ul>	
	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공박람회 및 아리엑스포시 비장애인 대상으로 장애학생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</li> <li>장애인의날 장애인식개선 퀴즈이벤트 등 실시</li> </ul>	
	정기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의날 총장간담회 실시</li> <li>장애학생 봉사도우미 만족도조사 및</li> </ul>	

		평가 년2회 • 장애학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년2회	사업별 세부 장애학생 지원 내용 참조
	기숙사 우선 배정 지원	• 장애학생기숙사 신청 시 우선배정	
	장애학생 봉사도우미 선발	•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 보조활동을 수행(이동 보조, 강의를 함께 수강하며 필기 대필, 교재 대체자료 제작 등 장애 학생의 요청에 따른 활동)	
취업 및 진로 지원	취업 및 진로 지원	•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	
	맞춤형 진로·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	• 진로·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전 진로·취창업 컨설턴트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	
편의시설 구축 현황 및 지원	탄성 바닥재 마감	• 교내 경사면에 탄성 바닥재로 마감하여 장애학생 이동편의 제공 및 미끄럼 방지	
	접근로 및 경사면 단차 제거	• 교내 건물 출입구 및 단차 발생 경사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 제공	
	시각장애인 유도 점자 블록 설치	•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교내 이동 편의 제공	
	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	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 제공	
	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	•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화장실 사용 편의 제공	
	교사시설 및 도서관 강당 등 장애인 전용 좌석 확보	• 교사시설 및 도서관, 강당 등에 장애인 전용 좌석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및 생활 편의 제공	
	기숙사등 추가 건축 및 설계시 장애학생 편의시설 우선 반영	• 기숙사등 추가 건축시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 및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우선 설치	
보조공학기기 지원	보조공학기기 대여	• 휠체어, 독서확대경, 전자확대경, 의사소통보조기기, 케인 등 편의제공	
장애인식개선 교육	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	• 신입생 대상 아리비전학기 (몰입학기포함) 1학년 교양필수 1학기(아리진로탐색과 대학생활) 2학기(아리진로 상담과 창의융합기업가정신)과 연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	

		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(1시간 분량)컨텐츠 상영을 통한 교육	
	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애인식개선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내 영상출력장치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영 (추후, 컨텐츠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비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)</li> </ul>	

### III 월별 사업 추진 일정

구 분	1학기					2학기				
	3	4	5	6	하계 방학	9	10	11	12	동계 방학
원격수업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
장애학생 현황 파악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
취업 및 진로 지원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
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	⇒
교수법 가이드북 제공 및 교수자 유의사항 공지	⇒					⇒				
오리엔테이션 실시										⇒
신입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	⇒					⇒				
1:1 상담 (상시상담도 가능)		⇒					⇒			
총장 간담회 실시		⇒								
신·편입생 나눔장학금 신청 및 지급		⇒								
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			⇒					⇒		
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만족도 조사 실시				⇒					⇒	
재학생 나눔장학금 우선감면 신청 및 지급				⇒					⇒	
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					⇒					⇒

장애학생특별지원 위원회 개최					⇒					⇒
기숙사 우선 배정					⇒					⇒
우선수강 신청 지원					⇒					⇒
봉사도우미 수요 파악 및 선발					⇒					⇒
강의별 교수·학습 조정 요청서 및 평가시 편의지원 요청서 접수					⇒					⇒

※코로나19 및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

## IV 사업별 세부 장애학생 지원 계획

### 가.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

- 1)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자체발전계획서 수립
- 2)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개최(연2회 이상)
- 3) 장애학생 등록 요청서 작성을 통한 장애학생 지원 및 관리

※ 상시 등록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 장애학생지원계획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중 장애학생등록신청서 작성 후,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

### 나. 장애유형별 맞춤형 강의계획서 지원

- 1) 장애학생이 신청한 맞춤형 강의계획서를 근거로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장애학생유형별 맞춤형 강의 지원
- 2) 신청기간 - 1~2월, 7~8월 중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학교 홈페이지 장애학생지원계획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중 맞춤형 강의계획서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

### 다. 학습 및 이동 봉사도우미 지원

- 1) 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는 수업지원 봉사도우미 및 이동 등 생활지원 봉사도우미 연계

- 2) 신청기간 - 1~2월, 7~8월 중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학교 홈페이지 장애학생지원계획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중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요청서(장애학생용) 및 학과장(지도교수) 장애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

#### 라. 우선수강신청 지원

- 1) 학기별 정규 수강신청 기간 전 장바구니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실시
- 2) 신청기간 - 장바구니 기간(세부 일정 추후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최종 수강과목 장바구니 담기 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중 우선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

#### 마. 평가기간 편의 지원

- 1) 장애학생이 신청한 평가기간 편의 지원 요청서를 근거로 장애학생유형별 평가기간 편의지원
- 2) 신청기간 - 1~2월, 7~8월 중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학교 홈페이지 장애학생지원계획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중 평가기간 편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

#### 바.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

- 1) 아리비전학기시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및 영상 상영을 통한 장애학생지원 안내
- 2) 신청기간 - 아리비전학기 기간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아리비전학기 신청기간 내 신청 후 참여

#### 사. 장학금 상담 및 나눔장학금 지원

- 1) 장학지원센터를 통한 장학금 상담 및 나눔장학금 지원
- 2) 신청기간 - 신·편입생 : 4월 중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  
재학생 : 6월, 12월 중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학교 홈페이지 장학지원센터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중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센터 제출

#### 아. 장애학생 상담 지원

- 1)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정기상담 지원(상시상담도 가능)
- 2) 신청기간 - 4월, 10월 중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사전면담요청 후,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

## 한해서 상담 진행

### 자. 장애학생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

- 1) 전공박람회 및 아리엑스포시 장애학생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장애인의날 장애 인식개선 퀴즈이벤트 실시
- 2) 신청기간 - 4월, 5월, 11월 중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행사기간내 부스 방문하여 직접 참여 및 SNS등을 통한 신청

### 차. 정기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실시

- 1) 장애인의날 총장간담회 실시 및 장애학생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만족도 조사 실시
- 2) 신청기간 - 총장간담회의 경우 4월 중 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총장간담회의 경우 참여의사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 시 참가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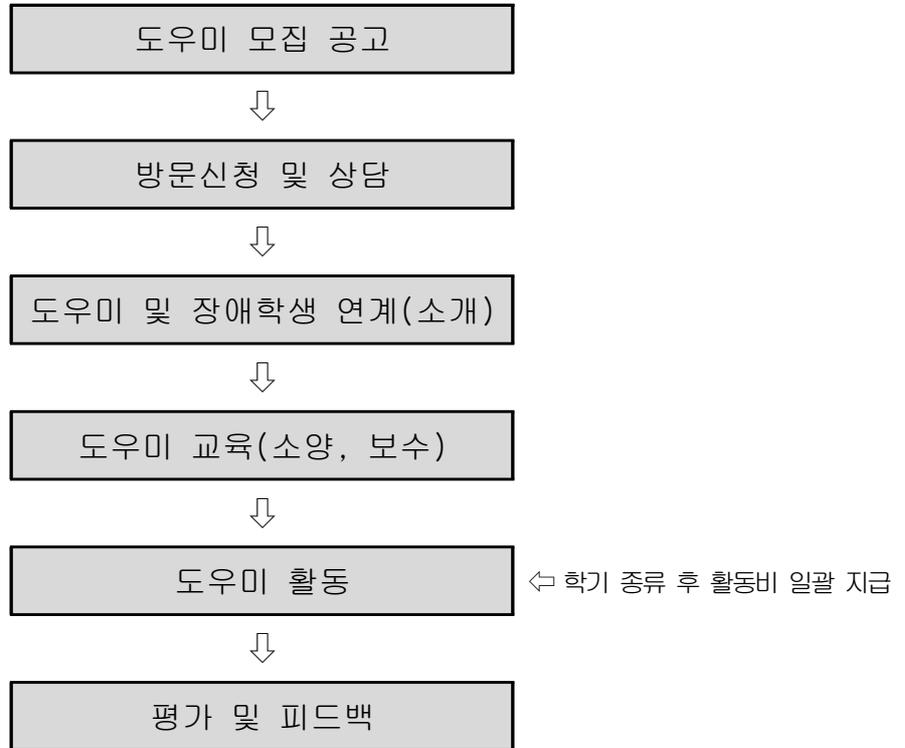
### 카. 기숙사 우선 지원

- 1) 장애학생 기숙사 신청시 우선 배정 지원
- 2) 신청기간 - 기숙사 건축 일정에 따라 변동(세부 일정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-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및 신청양식 공지 예정

### 타.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지원 제도

- 1)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장애학생 도우미의 경우 수요가 없어 현재 미지원(추후 수요 발생시 지원가능)
- 2) 교비지원을 통한 학교자체운영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지원을 통한 대학 생활 및 학습활동 등에 걸쳐 다양한 도우미 지원을 제공
- 3)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선발 기준
  - 장애학생이 추천하는 봉사도우미를 우선 매칭
  - 기존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학생의 추천
  - 장애학생이 속한 학과 및 지도교수 추천
  - 동성 봉사도우미 우선 매칭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성 봉사도우미 매칭
  -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모집공고
- 4) 장애학생 봉사도우미 운영 방법
  - 1:1 봉사도우미를 원칙으로 하되 1:1 봉사도우미 요청 장애학생이 없을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보조 및 장애인식개선 서포터즈 활동 병행
- 5) 1:1 봉사도우미 지원유형,내용 및 활동 절차

수업지원유형	지원내용
강의대필	강의대필을 신청한 장애학생의 교과목을 대필해줌
시험대필	장애학생이 말로 표현하거나 손으로 가리키는 답을 대신 작성함 (단, 해당지원을 위한 별도 시험 진행 등 교수와 사전 합의 필요)
수업외 지원유형	지원내용
생활지원	수업지원 외에 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학생의 기숙사, 도서관, 식당 등에서 도와줌
이동지원	시각장애나 지체장애학생 등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, 손을 잡아주거나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하도록 도와줌



#### 파. 취업 및 진로 지원

- 1) 취창업지원단과 연계한 장애학생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 실시
- 2) 신청기간 - 상시
- 3) 신청방법 -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상담 요청시  
취창업지원단과 연계

**하. 학습보조공학기기 지원**

- 1) 학교에 구비된 학습보조공학기기를 상시 대여 지원
- 2) 신청기간 - 상시
- 3) 신청방법 - 학교 홈페이지 장애학생지원센터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중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
- 4) 보유 학습보조공학기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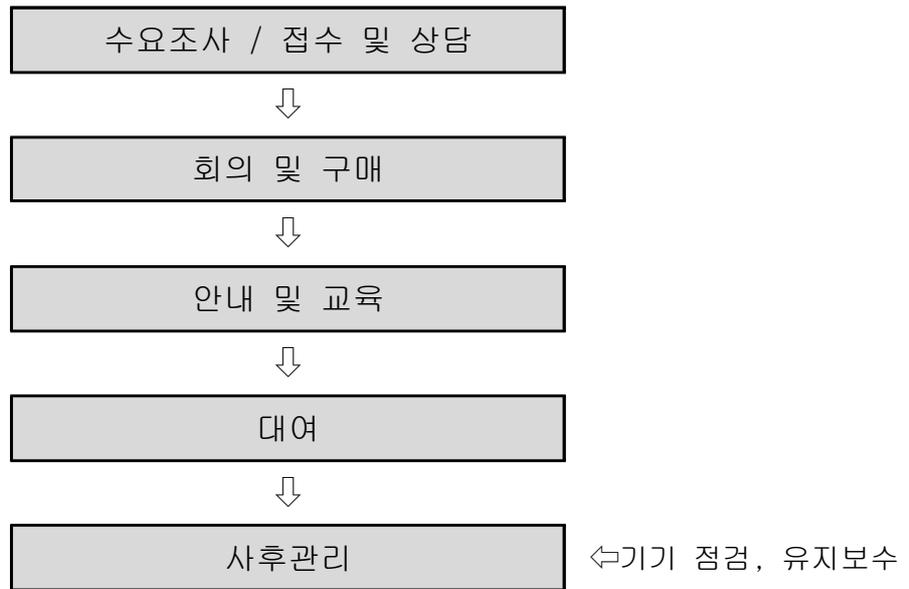
**가) 학습보조기기 현황**

보유기자재	장애유형	수량	구비장소
독서확대경	시각장애	2	장애학생지원센터
전자확대경	시각장애	1	장애학생지원센터
청취기기	청각장애	1	장애학생지원센터
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	지체·뇌병변장애	1	장애학생지원센터
빅트랙스위치	지체·뇌병변장애	1	장애학생지원센터
소보로탭라이트	청각장애	1	장애학생지원센터
메시지스톤	청각장애	1	장애학생지원센터

**나) 이동보조기기 현황**

보유기자재	장애유형	수량	구비장소
케인 (시각장애용 지팡이)	시각장애	1	장애학생지원센터
수동휠체어	지체·뇌병변장애	6	각 건물 경비실 (강화캠퍼스1개포함)

5) 학습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



## V 2024학년도 원격수업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계획

### 가. 추진배경

-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 및 대학의 편의제공 필요

#### < 근거 법령 >

-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·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·배제·거부 금지
  - ※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
-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활동 편의 제공
  - ※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

### 나. 장애학생 요구사항 사전조사 및 사전자료 제공

- 학기 시작 전 강의별 교수·학습 조정 요청서 및 평가시 편의 지원 요청서를 통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불편,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 후 사전에 교수에게 통보, 요청하여 수업 및 평가시 장애학생 상황에 맞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### 다. 교육지원인력 지원

- 현재 교육지원인력을 요청한 학생이 없어 미지원 중이지만 추후 수요 발생시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

### 라. 원격강의의 질 담보 노력 및 민원창구 활성화

- 교수들에게 사전에 교수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
-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언제든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

## 마.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요청시 필요한 사항 지원

시각장애	청각장애	지체장애	지적장애	뇌병변장애	기타장애
수업자료 지원 및 학습보조공학기기 (확대경, 청취기기, 휠체어 등)지원			수업자료 지원		

※담당 교수들에게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을 위한 수업자료(강의 ppt, 녹음파일, 강의 스크립트 등)제공을 요청

## 바. 교수자 유의사항 사전 안내

-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자에게 유의사항 사전 안내 및 협조요청

### 교수자 유의사항 교수자용 포스터 활용

- 사전 강의계획서 및 수업자료 탑재
- 입모양과 얼굴표정, 손짓 등을 볼 수 있도록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권장
- 강의안만 화면에 보여주는 경우 속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을 설명하고 있는지 마우스 포인터 등으로 실시간 표시 필요
- 시험시간 연장 및 과제제출 시간 연장 등 장애학생에게 맞는 평가방식 적용
-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인력의 수업 참여에 대한 이해
- (청각) 교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자막, 실시간 속기 등 필수
- (시각) 지시어(여기, 저기, 이쪽 등)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하게 설명 필요
- (시각) 그림 또는 화면을 설명하는 경우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화면해설 지원

## 사. 학습보조공학기기 확충

- 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는 학습보조공학기기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, 추후 장애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보조공학기기 추가 구매



## Ⅶ. 2024학년도 대학원 장애학생 지원 계획

---

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 및 대학의 편의제공 필요

### 가. 장학금 지원

- 1) 대학원 교학과에서 장학금 상담 및 지원
- 2) 신청시기 : 6 월 / 12 월 ( 일정 및 세부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)
- 3) 신청방법 : 장학금 신청 기간에 포털시스템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하여 신청
- 4) 지원내용 :
  - 가. 장학금 신청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면 대학원 교학과에서 1:1로 신청을 지원
  - 나. 매 학기 신청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에 장학금액을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

### 나. 장애학생 요구사항 사전조사 및 사전자료 제공

- 장애학생 요구사항 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업에 있어서 불편,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담당 교수에게 통보, 요청하여 수업 및 평가시 장애학생 상황에 맞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### 다.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요청시 필요한 사항 지원

- 담당 교수들에게 장애학생의 학습을 위한 수업자료(강의 ppt, 녹음파일, 강의 스크립트 등) 제공을 요청
- 학교에서 구비하고 있는 학습보조공학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,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보조공학기기가 있을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협조요청하여 지원

### 라. 교육지원인력 지원

- 현재 교육지원인력을 요청한 학생이 없어 미지원 중이지만 추후 수요 발생시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

### 마. 수업의 질 담보 노력 및 민원창구 활성화

- 교수들에게 사전에 교수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

○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타 사항이 있을시 대학원 교학과에서 지원

**바. 교수자 유의사항 사전 안내**

○ 대학원 교학과는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자에게 유의사항 사전 안내 및 협조요청

## VIII 대학원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

### 장학 규정(대학원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장학금 종류)**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② 교내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학비감면장학금: 학비감면 내규에 따라 지급(학비감면 내규는 등록금 책정시 결정함)  
[신설 2013.3. 1]
2. 성적우수장학금: 성적우수자에게 지급 [개정 2013.3. 1]
3. 특별장학금: 전공학과와 관계된 사회경력자 및 본교 기여자에게 지급[개정 2013.3. 1]
4. 봉사장학금: 재학 중 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 [개정 2013.3. 1]
- 5.주임교수추천장학금: 재학생 중 학과 기여자 및 가계곤란자에게 지급[신설 2013.3. 1]
  6. 가족장학 : 본교 학생 중 민법에서 정한 가족 2인 이상이 재학인 경우 대학원생 1인에게 지급. 단, 지급대상은 형제, 자매, 부자, 부녀, 모자, 모녀, 부부로 한다.[신설 2013.3.1][개정 2019.12.23.]
- 7.장애우장학금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[신설 2013.3. 1]
- 8.조교장학금: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내용은 대학원 「조교 규정」을 따른다.[개정 2013.3. 1]
9. 산학장학금 : 본교의 산학협력발전에 기여한 재직 교수가 추천하는 학생에게 지급[신설 2019.12.23.]
  - ③ 교외 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, 공공기관, 기타 단체 및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.[개정 2013.3. 1]
  - ④ 삭제[2013.3. 1]
  - ⑤ 삭제[2013.3. 1]
  - ⑥ 복지장학금: 재학생 중 가계곤란자에게 지급[신설 2017.11.1]

**제3조(지급대상)** ① 장학금은 대학원 전업 생으로서 정규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한다.

② 성적우수장학금은 각 학과별 재학생의 10% 이상의 인원을 선발하며, 학과별 최소인원은 5명을 기본인원으로 한다. 또한 평균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
1. 총점순위[신설 2013.3. 1]
2. 100점 환산점 순위[신설 2013.3. 1]
3. 취득(신청)학점수가 많은 자[신설 2013.3. 1]
4. 연장자[신설 2017.11.1]
- 5.성적장학 수혜경력이 없는 자[신설 2017.11.1]

**제4조(선발시기)** 장학생은 학기별로 선발한다.[개정 2013.3. 1]

**제5조(교외장학생 선정)** ① 출연기관에서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른다.[개정 2013.3. 1]

② 출연기관에서 학과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장학생수의 학과 간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학과를 지명하고, 주임교수가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선정한다.[개정 2013.3. 1]

**제6조(신청절차)** 장학금 수혜희망자는 매학기 시작 전 장학금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**제7조(지급시기 및 방법)**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기 중에 선발하여 학기 중에 지급하고,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한다. [개정 2013.3. 1]

② 교외장학금은 출연기관이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8조(자격제한, 지급중지 및 회수)** ①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되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며,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. [개정 2013.3. 1]

1.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
  2. 장학금의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
  3. 일반휴학자 및 군휴학자. 다만,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경우에는 인정[신설 2013.3. 1]
  4. 교직원 학비감면대상자 및 전액감면대상자(성적장학인 경우)[신설 2017.11.1]
- ② 성적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학기당 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. 다만, 신학대학원의 경우 제1학년 및 제2학년은 최소 15학점 이상, 제3학년은 1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.

## 부 칙

1. 이 시행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